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

주민등록법 제24조(주민등록증의 발급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)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7일

적 성 면 장



- 공 고 명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
- 공고기간: 2026. 9. 17. ~ 2026. 10. 3.(16일간)
- 공고대상

성 명	생년월일	주소	발급기간	세대주	공고사유
이O주	2009.09.15.	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000	2026. 10. 1.~ 2027. 9. 30.	이O주	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 불가

4. 신청장소: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5. 발급안내

-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-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.
 - 가)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)
 - 나) 주민등록증 관할 통장·이장의 확인
 - 다)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의 세대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 동행
- 준비해야 할 사진: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(3.5cm*4.5cm)

※ 위 발급기간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(과태료)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(문의전화: 031-940-8190, 8191)